

윤리규범 실천지침

2024. 09. 02.

피아이첨단소재 주식회사

1. 목적

본 윤리규범 실천지침(이하 '본 실천지침')은 피아이첨단소재 주식회사(이하 'PI')의 임직원 윤리규범(이하 '윤리규범')을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 가. 금품 : 현금, 유가증권, 선물, 특별할인 혜택 및 기타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 나. 향응·접대 : 식사, 음주, 레저활동 등의 수혜를 말한다.
- 다. 편의 : 시설, 교통편, 숙박, 관광, 행사, 견학 및 시찰 등과 관련된 금품 및 향응·접대 이외의 제공이나 지원을 말한다.
- 라. 이해관계자 :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권익에 영향을 받는 사내·외의 모든 자연인, 법인, 기타 단체(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를 말한다.
- 마. 외국공무원 등 : 외국정부의 입법, 행정 또는 사법업무 종사자(국회의원 포함), 국제기구직원, 공기업 및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외국의 공적 업무 수행자를 말한다.
- 바. 신고자 : 금품, 향응·접대 및 편의 등의 수수와 관련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모든 임직원을 말한다.
- 사.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 금품, 향응·접대 및 편의 등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자의적으로 제공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업무와의 대가성이 인정되거나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금액과 무관하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본다.
- 아. 업무 : 임직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직·간접의 사무를 말한다.

3. 대상

- ① 임직원은 윤리규범과 본 실천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윤리규범 및 본 실천지침에 대한 의문사항은 조직의 리더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문의하여야 한다.

4. 임직원 기본의무

4.1. 임직원 기본윤리

- ① 임직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업무에 임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② 임직원은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고 윤리규범 및 관련 규정을 숙지하며 이를 충실히 준수한다.
- ③ 임직원은 본인 또는 다른 임직원이 윤리규범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것을 강요 받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4.2. 이해상충 행위 금지

- ① 임직원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회사와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여 행동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회사와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이해상충 행위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가. 임직원이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하여 회사와 계약 또는 거래하는 행위
나. 회사의 경쟁자 또는 거래 당사자와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금전적인 이해관계나 권리·의무 관계를 가지는 행위

다. 회사의 재산이나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행위

라. 업무상 지위를 활용하여 협력업체에 인사청탁, 편의제공 등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마. 회사에서 성실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정도의 노력이 소모되는 부업을 하는 행위

바. 협력업체의 주식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행위

4.3. 경제적 이익 수수 금지 등

- ① 임직원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접대, 편의 등을 제공받아서 안 된다.
- ② 부채의 탕감 또는 대리 상환,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차하는 행위, 보증의 수수는 경제적 이익으로 본다.
- ③ 임직원의 친족이 수수한 경제적 이익은 본인이 수수한 것으로 본다.
- ④ 정당한 이유 없이 임직원 상호간에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거나 공여하여서는 안 된다.
- ⑤ 임직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접대, 편의 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환하고 회사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4.4. 부정청탁의 금지

- ① 본인이 직접 또는 제 3 자를 통해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받지 아니한다.
- ② 부정청탁이란 업무와 관련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하는 아래 각 호의 행위 등을 말한다.

가. 채용, 승진, 이동, 급여·복리후생 결정, 교육, 인사평가 등 인사 업무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입찰, 협력업체의 선정, 계약내용의 결정 등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행위

다. 기타 사적 이익을 위해 청탁을 하거나 알선, 지시하는 일체의 행위

4.5. 국제상거래

임직원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외국공무원 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 공여하거나 공여의사를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4.6. 건전한 기업문화를 해치는 행위 금지

- ① 성희롱·성폭력 금지 : 구성원 상호간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말 또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② 구성원간 다음과 같은 부당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직위·직책을 이용한 사적 업무 지시
 - 폭언, 폭행
- ③ 허위보고 금지 :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은폐, 축소, 과장 보고를 하여 경영진이 잘못된 의사 결정을 하도록 하지 아니한다.

5. 회사 자산 보호

5.1. 물적자산 보호

- ① 회사 자산의 손실을 초래하는 횡령, 기물 유출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 ② 회사의 재산을 승인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양도, 대여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
- ③ 회사의 예산은 정해진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회계기준 및 절차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 ④ 회사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상황이 발생하거나 가능성이 있을 경우 즉시 회사에 보고하고 손실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2. 지식재산 보호

- ① 회사의 내부 경영정보를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 ② 회사의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불법으로 제 3 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기타 비도덕적인 행위로 인해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③ 회사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 ④ 회사의 기밀정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회사 정보의 대외적 공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임직원은 타사의 지식재산권도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며, 특히 불법 소프트웨어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6. 법규 준수

- ① 국내·외에서의 모든 경영활동은 해당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거래의 관습을 존중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② 모든 거래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관련 사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③ 회계정보는 관련 법규 및 기업회계기준, 사규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며, 회계정보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보고하여서는 안 된다.
- ④ 제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는 관련 법규 및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품의 성능과 위험을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 ⑤ 안전·보건·환경과 관련된 국내·외 법규 및 국제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환경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7. 업무처리 절차

7.1. 담당 조직

- ① 윤리규범 및 본 실천지침의 운영과 관련한 담당조직은 법무/감사팀으로 한다.
- ② 상기 윤리경영 담당조직은 임직원의 자문에 응하고, 임직원에게 대한 지도·교육을 실시하며, 위반한 임직원에게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

7.2. 신고의무 및 제보자 보호

- ① 윤리규범과 본 실천지침의 위반사실을 인지한 임직원은 즉각 소속 부서의 리더나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정당한 신고를 한 임직원의 신분 및 신고 내용은 보호해야 하며,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7.3. 상담·신고처

윤리규범 및 본 실천지침에 대한 질의·상담 또는 신고처는 아래와 같으며, 신고자는 형식에 관계 없이 전자메일, 전화 또는 우편,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 ✓ E-Mail : ethics@pimaterials.com
- ✓ Tel : 02) 2181-8636/8625
- ✓ Fax : 02) 2181-8695
- ✓ 주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그랜드센트럴 B 동 16 층 (남대문로 5 가 253) 피아이첨단소재 주식회사 윤리경영 담당자

【부칙】

가. 본 윤리규범 실천지침은 2013년 7월 15일부로 시행한다.

본 윤리규범 실천지침은 2021년 10월 15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본 윤리규범 실천지침은 2024년 9월 2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나. 본 윤리규범 실천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규에 따라 처리한다.